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01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.

발 의 자: 안규백·고용진·김민기

김승원 · 양정숙 · 이성만

이정문 • 이형석 • 전혜숙
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.

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, 국회군인권보호 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·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회군인권 보호관법」을 제정하고자 함.

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 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「국회사무처법」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4889호) 및 「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」(의안번호 제49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"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·국회입법조사처장"을 "국회예산정책처장, 국회입법조사처·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군인권보호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권한의 위임) 「국가공무	제12조(권한의 위임)
원법」, 「국가재정법」, 「국	
유재산법」, 「물품관리법」,	
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	
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	
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국회도서관·국회도서	
관장, 국회예산정책처· <u>국회예산</u>	국회예산
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	정책처장, 국회입법조사처·국회
<u>처·국회입법조사처장</u> 에게 위임	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군인권
할 수 있다.	<u>보호관</u>